

의안번호	
의 퇴 인	김위상의원
회 답 일	2024. 7. 24.
추 계 번호	24B191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0조의2제1항(공원보호협약의 체결)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u>자연생태계</u>와 <u>자연 및 문화 경관</u>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와 <u>공원보호협약</u>을 체결하고 이를 <u>이행하기 위한 사업</u>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자연 경관’ 외에 ‘자연생태계’ 및 ‘문화 경관’에 대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원관리청의 이행사업 추진 및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0조의2제1항(공원보호협약의 체결)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공원관리청²⁾이 자연공원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공원보

- 1) 법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 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 공원관리청: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호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사업을 추진하며, 협약 상대방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보호협약 체결 수는 모두 498개소('15~'24년)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일반 펜스 등 공원보호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음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1831-301) 예산에서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공원보호 시설설치 지원중

※ [참고자료 1] 국립공원 내 공원보호협약 체결 및 예산 현황,

[참고자료 2] 자연공원 지정 현황 참고

-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와 문화 경관’에 대해서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공원보호협약 이행사업 추진 및 지원 범위가 늘어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에 사찰림 등에 대한 지원 사례가 없고,³⁾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활동을 위하여 체결하는 공원보호협약의 구체적 협약내용을 예상하기 곤란하여, 현 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가 한계가 있음

3)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공원보호협약 이행 관련 사업은 생태농업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국한되어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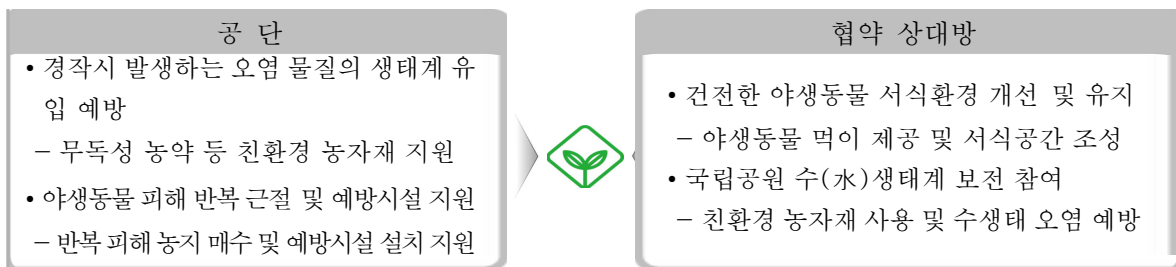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국립공원 내 공원보호협약 체결 현황

(환경부 제출자료)

□ 사업개념

- 국립공원의 생태계·경관 등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이에 상응하는 물적 지원을 하는 제도



□ 관련 법령

○ 자연공원법

- 제20조의2(공원보호협약의체결)**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약의 대상구역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해당 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체결)** 법제20조의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의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2. 공원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
 3. 공원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인(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그간의 경과

- (2017)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보호협약 근거 마련 및 예산배정
 - － 예산지원 상생협력실, 수요조사 및 사업추진 보전처로 이원화하여 사업 추진
- (2019) 위임전결 규칙 개정에 따라 상생협력실로 업무 이관(8월)
-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과 병행한 생태농업지원(공원보호협약) 추진

□ 공원보호협약 추진현황

(2024년 기준, 단위: 백만원)

연도	개소	예산	세부내용
계	498	2,032	
'15년	63개소	141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63개소 － 전기울타리 52개소, 일반펜스 11개소
'16년	34개소	124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34개소 － 전기울타리 18개소, 일반펜스 12개소, 경음경광기 4개소
'17년	118개소	198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118개소 － 전기울타리 39개소, 일반펜스 13개소, 경음경광기 66개소
'18년	45개소	247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45개소 － 전기울타리·목책 7개소, 일반펜스 29개소, 와이어헨스 1개소, 경음경광기 8개소
'19년	72개소	284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50개소 － 전기울타리 10개소, 일반펜스 38개소, 와이어헨스 2개소 • 생태농업 22개소
'20년	44개소	196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25개소 － 전기울타리 2개소, 일반펜스 15개소, 와이어헨스 8개소 • 생태농업 19개소
'21년	46개소	190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29개소 － 전기울타리 3개소, 일반펜스 26개소 • 생태농업 17개소
'22년	40개소	165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25개소 － 일반펜스 25개소 • 생태농업 15개소
'23년	19개소	187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19개소 － 일반펜스 19개소
'24년 (계획)	17개소	300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11개소 － 일반펜스 11개소 • 생태농업 2개소 • 경관가치 증진을 위한 공원보호협약 시범사업 4개소 － 훼손지 복원 2개소, 생태가치 증진 2개소

자료: 환경부 자연공원과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자연공원 지정 현황

(환경부 제출자료)

□ 국립공원 지정

(2024년 7월 기준, 단위: km²)

연번	공원명	위치	공원구역		비고
			지정년월일	면적	
계	23개소			6,888.395	육지: 4,106.019 해면: 2,782.375 ※ 국토면적의 4.09%(육상면적 기준)
1	지리산	전남·북, 경남	'67.12.29	485.647	
2	경주	경북	'68.12.31	137.418	
3	계룡산	충남, 대전	'68.12.31	64.176	
4	한려해상	전남, 경남	'68.12.31	537.479	해상 414.750
5	설악산	강원	'70. 3.24	400.027	
6	속리산	충북, 경북	'70. 3.24	278.921	
7	한라산	제주	'70. 3.24	153.444	
8	내장산	전남·북	'71.11.17	80.138	
9	가야산	경남·북	'72.10.13	76.792	
10	덕유산	전북, 경남	'75. 2. 1	228.919	
11	오대산	강원	'75. 2. 1	327.904	
12	주왕산	경북	'76. 3.30	106.114	
13	태안해안	충남	'78.10.20	388.604	해상 364.788
14	다도해상	전남	'81.12.23	2,276.209	해상 1,985.187
15	북한산	서울, 경기	'83. 4. 2	77.334	
16	치악산	강원	'84.12.31	176.567	
17	월악산	충북, 경북	'84.12.31	288.140	
18	소백산	충북, 경북	'87.12.14	321.264	
19	변산반도	전북	'88. 6.11	154.957	해상 17.650
20	월출산	전남	'88. 6.11	56.526	
21	무등산	광주, 전남	'13. 3. 4	75.721	
22	태백산	강원, 경북	'16. 8.22	70.036	
23	팔공산	대구, 경북	'23.12.31	126.058	

□ 도립공원 지정

(2024년 7월 기준, 단위: km²)

연번	공 원 명	위 치(시·군·별)	면 적	지정일
계	30개소		1,026.765	
1	금오산	경북 구미, 칠곡, 김천	37.262	'70. 6. 1
2	남한산성	경기 광주, 하남, 성남	35.139	'71. 3.17
3	모악산	전북 김제, 완주, 전주	43.309	'71.12. 2
4	덕산	충남 예산, 서산	19.859	'73. 3. 6
5	칠갑산	충남 청양	31.068	'73. 3. 6
6	대둔산	전북 완주, 충남 논산, 금산	59.996	'77. 3.23
7	마이산	전북 진안	17.220	'79.10.16
8	가지산	울산, 경남 양산, 밀양	104.345	'79.11. 5
9	조계산	전남 순천	26.750	'79.12.26
10	두륜산	전남 해남	32.910	'79.12.26
11	선운산	전북 고창	43.683	'79.12.27
12	문경새재	경북 문경	5.478	'81. 6. 4
13	경포	강원 강릉	1.689	'82. 6.26
14	청량산	경북 봉화, 안동	49.509	'82. 8.21
15	연화산	경남 고성	21.847	'83. 9.29
16	고북저수지	세종특별자치시	1.949	'91.1.17
17	천관산	전남 장흥	7.940	'98.10.13
18	연인산	경기 가평	37.691	'05. 9.15
19	신안갯벌	전남 신안	162.000	'08.06.05 ('13.12.31)
20	무안갯벌	전남 무안	37.122	'08.06.05
21	마라해양	제주도 서귀포시	95.292	'97. 8.23 ('08. 9.19)
22	성산일출해양	제주도 서귀포시	19.540	'97. 8.23 ('08. 9.19)
23	서귀포해양	제주도 서귀포시	49.755	'99. 1. 5 ('08. 9.19)
24	추자	제주도 제주시	16.156	'00. 8.31 ('08. 9.19)
25	우도해양	제주도 제주시	25.863	'00. 8.31 ('08. 9.19)
26	수리산	경기 안양, 안산, 군포	7.035	'09. 7.16
27	제주곶자왓	제주도 서귀포시	1.547	'11.12.30
28	벌교갯벌	전남 보성	23.068	'16. 1.28
29	불갑산	전남 영광	7.004	'19. 1.10
30	성재산	강원 철원	4.739	'23. 7.21

□ 군립공원 지정

(2024년 7월 기준, 단위: km²)

연번	공 원 명	위 치(시·군별)	면 적	지정일
계	28개소		254.481	
1	강천산	전북 순창군 팔덕면	15.800	'81. 1. 7
2	천마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진천면, 호평면	12.375	'83. 8.29
3	보경사	경북 포항시 송라면	8.511	'83.10. 1
4	불영계곡	경북 울진군 울진읍, 서면, 근남면	25.595	'83.10. 5
5	덕구온천	경북 울진군 북면	6.275	'83.10. 5
6	상죽암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하이면	5.094	'83.11.10
7	호구산	경남 남해군 이동면	2.839	'83.11.12
8	고소성	경남 하동군 악양면, 화개면	3.035	'83.11.14
9	봉명산	경남 사천시 곤양면, 곤명면	2.645	'83.11.14
10	거열산성	경남 거창군 거창읍, 마리면	3.271	'83.11.17
11	기백산	경남 함양군 안의면	2.013	'83.11.18
12	황매산	경남 함천군 대명면, 가회면	21.784	'83.11.18
13	웅석봉	경남 산청군 산청읍, 금서·삼장·단성	17.960	'83.11.23
14	신불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삼남면	11.585	'83.12. 2
15	운문산	경북 청도군 운문면	16.173	'83.12.29
16	화왕산	경남 창녕군 창녕읍	31.258	'84. 1.11
17	구천계곡	경남 거제시 신현읍, 동부면	5.868	'84. 2. 4
18	입곡	경남 함안군 산인면	0.961	'85. 1.28
19	비슬산	대구 달성군 옥포면, 유가면	13.382	'86. 2.22
20	장안산	전북 장수군 장수읍	6.274	'86. 8.18
21	빙계계곡	경북 의성군 춘산면	0.890	'87. 9.25
22	아미산	강원 인제군 인제읍	3.160	'90. 2.23
23	명지산	경기 가평군 북면	14.020	'91.10. 9
24	방어산	경남 진주시 지수면	2.588	'93.12.16
25	대이리	강원 삼척시 신기면	3.664	'96.10.25
26	월성계곡	경남 거창군 북상면	0.650	'02. 4.25
27	병방산	강원 정선군 정선읍	0.469	'11. 9.30
28	장산	부산 해운대구	16.342	'21. 9.15.